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394
----------	------

2021년 7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1년 5월 31일
3. 상정일자 :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6월 16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임.
- 나. 하지만 서비스 제공기관 영세성으로 인한 운영 역량 부족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양성을 위해 노무·회계관리 및 교육 등을 통한 관리 역량 보완 필요.
- 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훈련(컨설팅) 기능 및 지역맞춤형

사회 사회사회서비스 기획·발굴 등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지원단 운영 필요.

## 2. 주요내용

### 가. 위탁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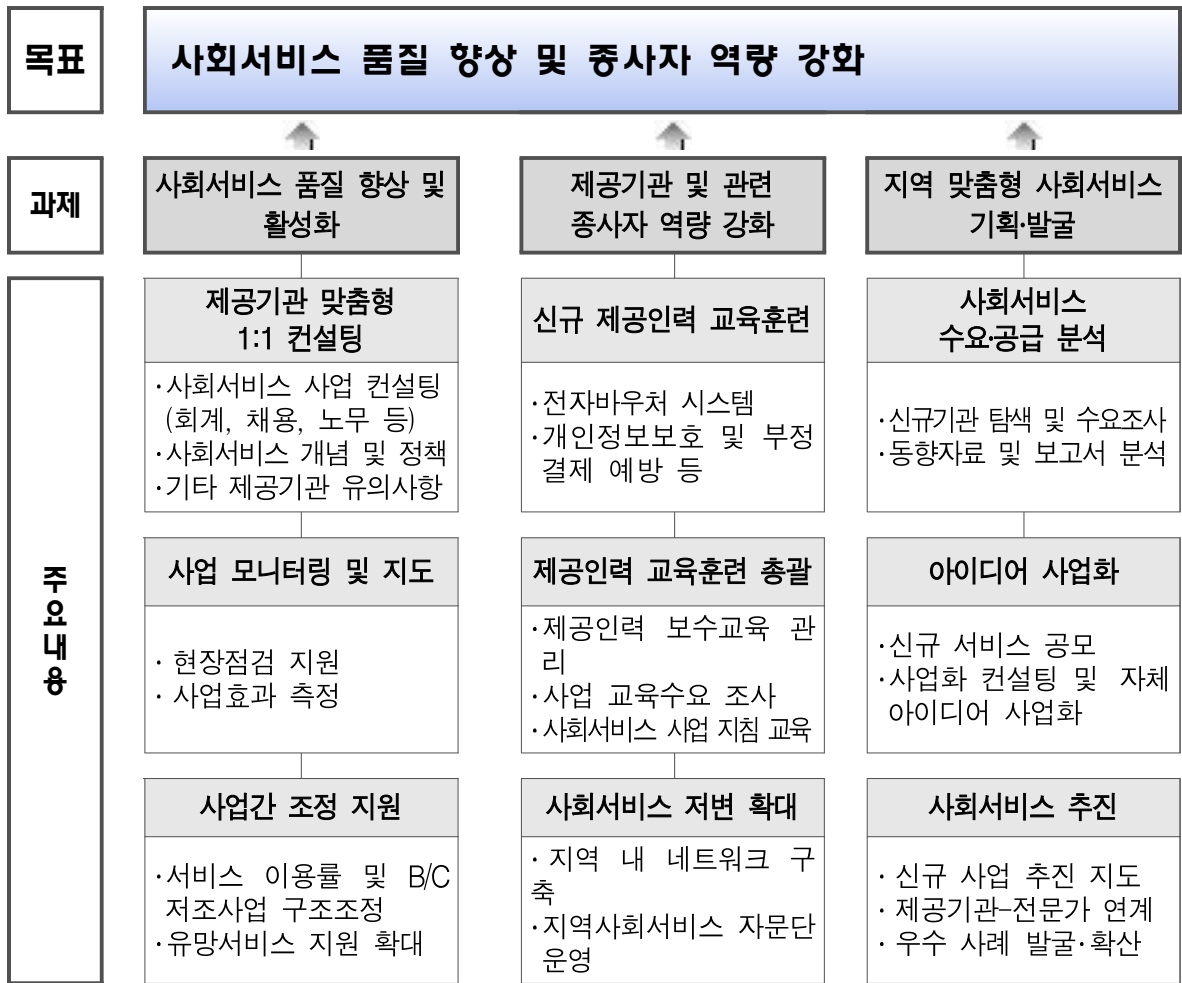
- 사 무 명: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 위탁형태: 사무위탁
- 수탁기관: 교육전문 기관 또는 단체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위탁기간: 3년('22.1.1.~'24.12.31.)
- '21년예산: 38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나. 위탁 목적

-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품질 향상 및 활성화
-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기획·발굴

### 다. 위탁사무 내용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기획·발굴 및 조사·연구 분석
-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 자치구 공무원 교육
-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훈련 및 관리
- 제공기관 컨설팅 지원 등 사회서비스 공급기반 전문성 강화
-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 및 민관네트워크 구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제31조(교육과 훈련) ②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2년 본예산 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이하 “지원단”라 함)의 운영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6년이 경과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sup>1)</sup>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sup>2)</sup>을 추진하고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 시장이 위탁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기획·발굴 및 조사·연구 분석
  -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 자치구 공무원 교육

-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28.>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3. 28.>
-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 3. 28.>
-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훈련 및 관리
- 제공기관 컨설팅 지원 등 사회서비스 공급기반 전문성 강화
-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 및 민관네트워크 구축

## 2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검토

### 가. 민간위탁 사무 경과

- 지원단은 2011년 5월에 최초 설치 이후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 및 훈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품질 향상 및 활성화,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기획·발굴 등 서울 소재 지역사회서비스기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중이며 재위탁 추진 개요는 다음과 같음.

####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개요 >

- 사무명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 위탁형태 : 사무위탁
- 수탁기관 : 교육전문 기관 또는 단체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기간 : 3년('22.1.1.~'24.12.31.)
  - 1차 보건복지부 지정: 2011. 5 ~ 2011. 12월, 수탁기관: 서울시복지재단
  - 2차 재계약 : 2012. 1 ~ 2012. 12월, 수탁기관: 서울시복지재단
  - 3차 재계약 : 2013. 1 ~ 2015. 12월, 수탁기관: 서울시복지재단
  - 4차 재계약 : 2016. 1 ~ 2018. 12월, 수탁기관: 서울시복지재단
  - 5차 재계약 : 2019. 1 ~ 2021. 12월, 수탁기관: 서울시복지재단
- 사업예산 : 380,000천원('21년) ※국비50%, 시비50%

- 2011년 최초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서울시복지재단이 4차의 재계약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지원의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무는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기관(인력),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발굴 및 기획, 지역사회서비스 공급자 역량 강화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활성화를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음.

<표>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주요 사업 추진목표

2019년	2020년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서비스 발굴 및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발굴</li> <li>- 지역사회서비스 조사연구</li> <li>-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안내서 제작·보급</li> </ul> </li> <li>●지역사회서비스 공급자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인력) 교육(11회)</li> <li>- 사업담당 공무원 교육(3회)</li> </ul> </li> <li>●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 현장점검 지원(80개소)</li> <li>- 민관 교류협력</li> <li>- 홈페이지 운영 및 뉴스레터 발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서비스 발굴 및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사회서비스 사업 개발</li> <li>- 사업기준정보 리모델링</li> <li>- 서비스이용자 만족도조사</li> <li>-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안내서 제작·보급</li> </ul> </li> <li>●지역사회서비스 공급자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인력) 교육(18회)</li> <li>- 사업담당 공무원 교육(5회)</li> </ul> </li> <li>●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 현장점검 지원(60개소)</li> <li>- 민관 교류협력</li> <li>- 홈페이지 운영 및 뉴스레터 발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서비스 발굴 및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면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li> <li>- 신규 사회서비스 사업 개발</li> <li>- 서비스이용자 만족도조사</li> <li>-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안내서 제작·보급</li> </ul> </li> <li>●지역사회서비스 공급자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인력) 교육(33회)</li> <li>- 사업담당 공무원 교육(5회)</li> </ul> </li> <li>●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 현장점검 지원</li> <li>- 민관 교류협력</li> <li>- 홈페이지 운영 및 뉴스레터 발간</li> </ul> </li> </ul>

#### 나.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민간위탁 실적

- 2019~2021년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총 4개의 대단위 사업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음.
- 대단위 사업별로 살펴보면, 지원단은 지역사회서비스의 발굴 및 기

획 부분에서 조사와 연구, 시범사업의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급자 역량강화 및 지원 부분에서 공무원과 바우처 제공기관을 대상(관리자 및 직원)으로 한 교육 및 매뉴얼 보급을 수행하였음.

- 또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활성화 부분에서는 현장점검, 네트워크,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질적 제고와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였음.
- 21년의 실적을 살펴보면 ‘비대면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노원구) 추진 지원 등 시의성을 갖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2019~2020년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만족도 조사’ 결과 2019년은 3개 사업 만족도 평균이 92.1%. 2020년은 90.7%로 전체 평균은 91.4%로 나타나 적절하게 사업이 수행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20년은 ‘19년에 비해 만족도가 일부 하락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음.

<표> 2019~2020년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만족도 조사

구분	만족도 조사 결과	피드백 실적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94.1%</li> <li>○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89.6%</li> <li>○ 산모산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92.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공유회 발표 및 안내</li> <li>- 자치구 공무원 및 제공기관 대상 결과 배포 및 공유</li> <li>- 홈페이지 안내</li> <li>- 뉴스레터 수록·배포</li> </ul>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93.3%</li> <li>○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91.8%</li> <li>○ 산모산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87.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설명회 자료 수록</li> <li>- 자치구 공무원 및 제공기관 대상 결과 배포 및 공유</li> <li>- 홈페이지 안내</li> <li>- 뉴스레터 수록·배포</li> </ul>

※ 만족도 조사 점수: 전반적 만족도(\*긍정응답 비율/매우그렇다,그렇다,약간그렇다)

- 동 사무의 서울시복지재단 “민간위탁사업 평가결과” 총평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에도 유사·중복사업의 축소조정 등 사업재구조화, 신규 사업개발 등에 노력을 기울이며,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확인된다고 하였음.
- 하지만 제공기관 점검결과 구별 제공 서비스, 예산규모 및 대상자 등이 상이하여 구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민간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만큼 자율성을 보장하되 점검·평가·조사 등에서 엄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표〉 2020년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점검결과

(단위 : 건, 원)

자치구	조치결과						계 (건수)
	주의	경고	과징금		환수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b>합계</b>	<b>528</b>	<b>14</b>	<b>2</b>	<b>2,466,900</b>	<b>21</b>	<b>10,202,750</b>	<b>565</b>
종로	15	-	-	-	-	-	15
중구	7	-	-	-	1	216,000	8
용산	-	-	-	-	-	-	-
성동	11	-	-	-	-	-	11
광진	25	-	-	-	1	40,000	26
동대문	30	-	-	-	-	-	30
중랑	26	-	-	-	1	36,000	27
성북	22	1	1	2,160,000	-	-	24
강북	21	2	-	-	-	-	23
도봉	29	-	-	-	-	-	32
노원	10	-	-	-	7	371,750	17
은평	31	-	-	-	-	-	31
서대문	1	1	-	-	1	12,000	3
마포	40	-	-	-	-	-	41
양천	29	1	-	-	1	6,162,000	31
강서	59	1	-	-	1	180,000	61
구로	65	-	-	-	-	-	65
금천	23	-	-	-	3	1,960,000	26
영등포	25	2	1	306,900	1	1,024,000	29
동작	7	3	-	-	2	136,000	12



자치구	조치결과						계 (건수)
	주의	경고	과징금		환수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관악	11	3	-	-	2	65,000	16
서초	20	-	-	-	-	-	20
강남	10	-	-	-	-	-	10
송파	-	-	-	-	-	-	-
강동	11	-	-	-	-	-	-

- 따라서 향후 재위탁을 통해 현수탁자가 계속하여 사무를 위탁하게 될 경우, 앞서 지적된 개선 요구사항을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지원단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표〉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결과

구분	2019년	2020년
투입 부문	지원단이 이용하는 시설·기자재는 재단 자원이므로 자체 자원 마련 방안 필요	적정
과정 부문	서비스 이용자 수용 가능 인원을 감안하여 무작위 홍보보다는 유관 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홍보 마련 필요	코로나 상황 감안,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교육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 있으며 화상교육, 동영상 제공교육도 같이 고려되어야함
산출 부문	기존 서비스 유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고유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 회의 등을 확대 실시	사업개편안 및 신규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필요
활용 부문	서비스 품질 관리 방안 모색 및 FGI를 반영한 환류 필요	이용자의 재이용 의향에 대한 만족도 결과는 낮은 편(부정적 응답 55.6%)이어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함

### 3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조례」 제4조<sup>3)</sup> 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sup>4)</sup>에 따르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서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지정 및 관리 주체’는 시·도지사이며,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시·도 산하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등 지역내 지원단 기능에 대한 수행 역량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그러므로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은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판단됨.

- 
-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삭제
-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교육과 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 방법, 절차, 비용 등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4 종합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동의안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동 위탁 사무는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의 체계적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관리 체계가 요구됨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 시킬 수 있는 민간전문가에 의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참고**

**2019~2021년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추진실적**

구분	추진 실적
2019년	<p><b>【지역사회서비스 발굴 및 기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서비스 조사·연구(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형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모델개발 연구</li> <li>- 이용자만족도 조사 및 FGI(1,501명)</li> </ul> </li> <li>■ 신규사업 개발 및 사업 재구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 본사업화 : 성인장애인맞춤운동서비스</li> <li>- 구개발사업 광역화 : 청년심리지원서비스(마포)</li> <li>- 신규서비스 아이디어 공모</li> </ul> </li> <li>■ 사업 기준정보 관리(2회)</li> </ul>
	<p><b>【사회서비스 공급자 역량강화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설명회(1회) *공무원, 제공기관 별도</li> <li>■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안내서 제작·보급</li> <li>■ 자치구 공무원(총6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크숍(1회), 교육(5회)</li> </ul> </li> <li>■ 제공기관 및 인력(총2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4회)</li> <li>- 제공인력(11회) : 지투(9회), 산모(1회), 제공기관기획(1회)</li> <li>- 신규기관 컨설팅(4회), 품질관리 교육(1회)</li> </ul> </li> <li>■ 품질관리 미흡기관 사후컨설팅 : 9개소(각2회)</li> </ul>
	<p><b>【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활성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 현장점검 지원(76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투(47개소), 산모(17개소), 가사간병(12개소)</li> </ul> </li> <li>■ 네트워크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서비스 성과공유회</li> <li>- 간담회(총5회) : 자치구 공무원(3회), 제공기관(1회), 이용자(1회)</li> <li>-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li> <li>-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10회)</li> <li>- 사업안내 리플릿 및 이용자가이드 제작·배포</li> <li>- 대외협력(24회), 자문회의(3회/운영자문 2회, 교육자문 1회)</li> <li>- 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3건)</li> </ul> </li> </ul>
	<p><b>【기타 관리 및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원</li> <li>○ e나라도움 관리·운영</li> <li>○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 지원 (상반기 사업계획서, 하반기 실적보고서)</li> </ul>

구분	추진 실적
2020년	<p><b>【지역사회서비스 발굴 및 기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FGI(1,511명)</li> </ul> </li> <li>■ 신규사업 개발 및 사업 재구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면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신규사업 개발</li> <li>- ‘중장년 1인가구심리지원서비스’(은평구) 신규사업 개발 지원</li> <li>-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재구조화(단가인상, 서비스 내용 조정 등)</li> <li>- ‘스마트건강증진서비스’ 사업 폐지</li> </ul> </li> <li>■ 사업 기준정보 관리(2회)</li> </ul> <hr/> <p><b>【사회서비스 공급자 역량강화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설명회(1회) *공무원, 제공기관 별도</li> <li>■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안내서 제작·보급</li> <li>■ 자치구 공무원(총6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크숍(2회), 교육(4회)</li> </ul> </li> <li>■ 제공기관 및 인력(총3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7회)</li> <li>- 제공인력(19회) : 지투 공통(7회), 지투(8회), 제공기관기획(4회)</li> <li>- 신규기관 컨설팅(4회)</li> </ul> </li> <li>■ 품질관리 미흡기관 사후컨설팅 : 2개소(각2회)</li> <li>■ 영상 제작 및 배포(4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 제공기관 운영안내, 제공기관 안전관리, 이용자 안내</li> </ul> </li> </ul> <hr/> <p><b>【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활성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 현장점검 지원(49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투(34개소), 산모(11개소), 가사간병(4개소)</li> </ul> </li> <li>■ 네트워크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서비스 성과공유 : 우수사례 시상,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변경사항 소책자 제작 및 배포</li> <li>- 자문회의(총7회) : 운영자문(2회), 사업재구조화자문(3회), 교육자문(1회), 조사연구(1회)</li> <li>- 간담회(총6회) : 공무원(2회), 제공기관(3회), 이용자(1회)</li> <li>-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li> <li>-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8회)</li> <li>- 사업안내 리플릿 및 이용자가이드 제작·배포</li> <li>- 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6건)</li> </ul> </li> </ul> <hr/> <p><b>【기타 관리 및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원</li> <li>○ e나라도움 관리·운영</li> <li>○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 지원 (상반기 사업계획서, 하반기 실적보고서)</li> </ul>

구분	추진 실적
2021년 4월	<p><b>【지역사회서비스 발굴 및 기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면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노원구) 추진 지원</li> <li>■ 사업 기준정보 관리</li> </ul>
	<p><b>【사회서비스 공급자 역량강화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설명회(1회) *공무원, 제공기관 별도</li> <li>■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안내서 제작·보급</li> <li>■ 자치구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1회)</li> </ul> </li> <li>■ 제공기관 및 인력(총1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4회)</li> <li>- 제공인력(8회) : 지투공통(4회), 지투(4회)</li> <li>- 신규기관 컨설팅(1회)</li> </ul> </li> <li>■ 영상 제작 및 배포(1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 등록 안내</li> </ul> </li> </ul>
	<p><b>【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활성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 현장점검 지원 (*계획수립 완료)</li> <li>■ 네트워크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li> <li>-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1회)</li> <li>- 사업안내 리플릿 및 이용자가이드 제작·배포</li> </ul> </li> </ul>
	<p><b>【기타 관리 및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원</li> <li>○ e나라도움 관리·운영</li> <li>○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 지원 (상반기 사업계획서)</li> </ul>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394
----------	------

제출년월일 : 2021년 5월 2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임
- 나. 하지만 서비스 제공기관 영세성으로 인한 운영 역량 부족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양성을 위해 노무·회계관리 및 교육 등을 통한 관리 역량 보완 필요
- 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훈련(컨설팅) 기능 및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기획·발굴 등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지원단 운영 필요

## 2. 주요내용

- 가. 위탁 개요
  - 사무명: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 위탁형태: 사무위탁
  - 수탁기관: 교육전문 기관 또는 단체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위탁기간: 3년('22.1.1.~'24.12.31.)
  - '21년예산: 38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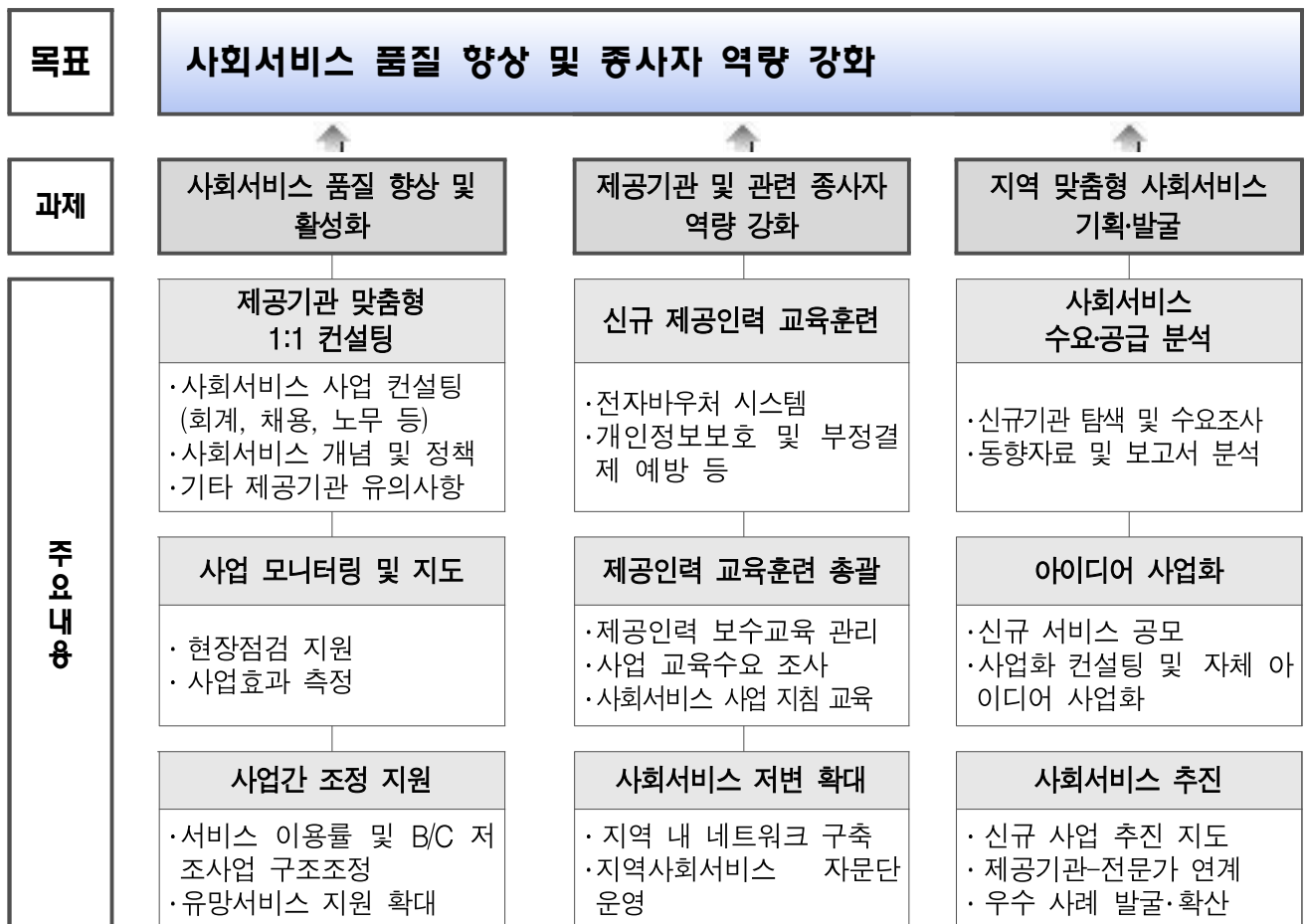


나. 위탁 목적

-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품질 향상 및 활성화
-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기획·발굴

다. 위탁사무 내용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기획·발굴 및 조사·연구 분석
-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 자치구 공무원 교육
-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훈련 및 관리
- 제공기관 컨설팅 지원 등 사회서비스 공급기반 전문성 강화
-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 및 민관네트워크 구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제31조(교육과 훈련) ②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2년 본예산 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백현기 (☎ 2133-7340)